

##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

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·제3항 및 「구제역 예방접종·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」 규정 제3조·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,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.

2026년 1월 5일  
파 주 시 장

- ① 목적 :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
- ② 지역 : 파주시 전 지역
- ③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
  - 가. 대상가축 : 파주시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(소, 돼지, 염소)
    - \*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
  - 나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- ④ 실시기간 :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
- ⑤ 기타사항
  - 가. 예방접종 방법** : 「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」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('20.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: 근육접종)
  - 나.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** :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
    - 항체양성률 기준치(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) : 소 80% 이상,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% 이상, 육성용 돼지 30% 이상
  - 다.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**
    1.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1회 500만원, 2회 750만원, 3회 1,000만원)
    2.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

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

3.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(공문)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~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,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

**라. 주의사항** :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“나”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

**마. 문의사항** : 파주시 동물관리과 가축방역팀(☎031-940-4501)